(재)포항테크노파크 공고 2020 - 74호

#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
# 2차 기술사업화지원 참여기업 모집

(재)포항테크노파크에서기술이전 중개를 통한 기술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「기술사업화지원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7월 23월
(재)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

## Ⅰ 사업개요

○ **사 업 명** :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기술사업화지원사업

○ **사업기간** : 2020. 07 ~ 2020. 12 (6개월)

○ **지원목적** : 우수 기술 이전기업 대상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기술이전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
## Ⅱ 사업지원내용

○ **지원대상 및 조건**

| 구분 | (필수)지원대상 및 조건 |
|---|---|
| **기술사업화지원** | ■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소재한 기업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<br>■ 2018년 1월 이후 포항TP 기술이전중개를 통해 기술을 도입한 기업<br>■ 사업신청 전 기술거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기업<br>■ 프로그램별 도입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|

○ **지원기간** :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**※ 선정 후 협약기간 조정**

○ **지원프로그램 : 기업 당 최대 25백만원 이내**

| No. | 프로그램 | 지원한도 | 내 용 | 기업 자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시제품제작 | 15,000천원 | 시제품 설계, 제작지원,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| 지원금의 10% 이상 (VAT 제외) |
| 2 | 시험·인증 | 7,000천원 | 국내·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, 성능, 규격, 표준화 등 | |
| 3 | 디자인 | 7,000천원 | 브랜드개발(BI, CI), 제품디자인 설계·제작, 디자인 컨설팅 등 | |
| 4 | 마케팅 | 7,000천원 | 국내·외 홍보, 마케팅전략수립, 전시회, 브로슈어 제작 등 | |

**※ 상기 금액은 최대 지원금이며,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**

○ **기업지원금 지급**

-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, 공급기업에 지금을 원칙으로 함.
  단, 시험・인증, 전시회 등은 담당자와의 협의 후 선지급 가능.
- 최종 결과평가 후 목표를 미 달성했다고 보여질 경우(불성실수행)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부가세(VAT) 포함금액이며 TP지원금의 초과분은 신청한 기업이 부담, 기업자부담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10%이상 자부담

○ **참고사항**

- 동일분야 신청 시, 기 지원기술에 대해서는 지원불가(ex. 시제품 2건 신청 x)
- 이전 기술 1건당 프로그램별 1회 지원가능, 기업 당 최대 지원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차회 타 프로그램 신청 가능
  ※ 4개 프로그램 25백만원 한도 내 신청가능
- 사업비 지급방식 : 간접지원 방식 임, 결과 평가 후 포항TP →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

# Ⅲ 사업추진일정

| 추진절차 | 추진주체 |
|---|---|
| 신청서 접수 | 기술도입기업 → 포항TP |
| ⇩ | |
| **선정평가** | 평가위원회 |
| ⇩ | |
| 협약체결 | 포항TP ↔ 선정기업 |
| ⇩ | |
| 과제수행 | 선정기업 |
| ⇩ | |
| **진도점검(모니터링)** | 포항TP ↔ 기업 |
| ⇩ | |
| 결과보고서 제출<br>(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) | 기업 → 포항TP |
| ⇩ | |
| **결과평가**<br>**(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)** | 평가위원회 |
| ⇩ | |
| 결과통보 | 포항TP → 기업 |
| ⇩ | |
| 사업비지급 | 포항TP → 공급기업 |
| ⇩ | |
| 성과조사 | 포항TP |

**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**

## Ⅳ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내용

○ **선정평가 방법 : 서면평가**

-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, 지원 필요성, 사업계획의 적정석, 기대효과 등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규모가 조정 될 수 있음

○ **결과평가 방법 : 서면평가**

- 사업 기간종료 후 20일 이내 시행
-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
-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성과 달성도, 지원의 기대효과 등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확정

## Ⅴ 신청 및 접수

○ **접수기간**

- 2차 접수기간 : 공고게재일 ~ 2020. 08. 24(월) 18:00 까지

○ **접수방법** : 온라인 신청 (사업 공고 온라인신청 버튼 클릭)

○ **등록서류**

| 구분 | 등록서류 목록 | 비고 |
|---|---|---|
| 필수 | ① (서식 제1호)사업계획서 | 서식 제1호 |
| | ② (서식 제2호)자부담 현금출자확약서 | 서식 제2호 |
| | ③ (서식 제3호)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| 서식 제3호 |
| | ④ (서식 제4호)평가결과 수락확약서 | 서식 제4호 |
| | ⑤ (서식 제5호)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| 서식 제5호 |
| | ⑥ 사업자등록증 | |
| | ⑦ 최근 3년(17~19년) 재무제표<br>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 | |
| | ⑧ 신청내용 관련 견적서(공급기업) | |
| | ⑨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| |
| 해당시 | ⑩ 수출실적증명서 | |
| | ⑪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 | |
| | ⑫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 | |

## Ⅵ 유의사항

○ **지원제외 대상**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 집행법에 의하여 체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최근결산기준 자본 전액잠식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제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인 기업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**지원대상 기업(기술) 선정**

- 선정평가전 서류적격여부 사전검토(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)
- 지원대상의 적격성, 사업수행 여부, 사업화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- 지원기업이 다수인 경우 기술거래 금액이 높은 기술을 우선지원 할 수 있음
-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○ **(진도점검)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**

○ **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**

○ **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포항TP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표기**

- 표기 방법 및 기재 위치는 자율적으로 시행가능

○ **협약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**

○ **협약기간 내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14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(자부담증빙)를 함께 제출해야 함**

○ **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**

○ **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**

## Ⅶ 문의처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담당부서** | 기업지원실 지역산업육성팀 | **연락처** | 이진석 사원 054-223-2235 |
| **주 소** | (37668)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(207호) | | |